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54

제출연월일 : 2005. 11 . .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 개정이유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교육 기관의 설치에 관한 내용을 동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교육청의 관련 조례를 보완·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충청북도교육청에 두는 행정기구와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 기관의 설치, 조직과 분장사무 등에 관하여 조례로 규정함(안 제1조)

나. 지역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 설치와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위임하여 정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으로 도서관, 학생회관, 학생야영장, 교직원복지회관을 둠(안 제29조)

라. 도서관을 설치하여 관장을 두며, 위치 및 명칭을 정함 (안 제30조 및 별표 2)

마. 학생회관을 설치하여 관장을 두며, 위치 및 명칭을 정함. (안 제31조 및 별표 3)

바. 학생야영장을 설치하여 장장을 두며, 위치 및 명칭을 정함 (안 제32조 및 별표 4)

사. 교직원복지회관을 설치하여 관장을 두며, 위치 및 명칭을 정함 (안 제33조 및 별표 5)

❑ 개정조례안 : 붙임

❑ 참고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내지 제36조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제7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에 두는 행정기구와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의 설치, 조직과 분장사무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지역교육청 하부조직의 설치 등) 지역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 설치와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제29조 내지 제33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제29조(설치)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으로 도서관, 학생회관, 학생야영장, 교직원복지회관을 둔다.

제30조(도서관) ①도서를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하여 공중의 열람 및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조사·연구·학습·교양 등 평생교육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서관을 둔다.

②도서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관할 교육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도서관의 위치 및 명칭은【별표 2】와 같다.

제31조(학생회관) ①청소년들의 교양증진, 소질계발, 정서순화 등 전인교육에 기여하고, 여가 선용을 통한 특별활동의 장을 마련하여 건전한 인격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학생회관을 둔다.

②학생회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관할 교육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학생회관의 위치 및 명칭은 【별표 3】과 같다.

제32조(학생야영장) ①학생들로 하여금 대자연과 접하게 하여 정서를 순화시키고 진취적 기상과 의욕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학생야영장을 둔다.

②학생야영장에 장장을 두며, 장장은 관할 교육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학생야영장의 위치 및 명칭은【별표 4】와 같다.

제33조(교직원복지회관) ①교직원의 자질 향상과 후생·복지증진을 위하여 교직원복지회관을 둔다.

②교직원복지회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관할 교육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교직원복지회관의 위치 및 명칭은【별표 5】와 같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

관할교육청	도서관명	위치
충청북도충주교육청	충주학생도서관	충청북도 충주시 성내동 229
충청북도충주교육청	중원도서관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신중리 130-3
충청북도청원교육청	청원도서관	충청북도 청원군 미원면 미원리 281-3
충청북도보은교육청	보은도서관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삼산리 125-4
충청북도옥천교육청	옥천도서관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 39-1
충청북도영동교육청	영동도서관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20-3
충청북도진천교육청	진천도서관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349-2
충청북도괴산교육청	괴산도서관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서부리 259-12
충청북도괴산교육청	증평도서관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증평리 764
충청북도음성교육청	음성도서관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209
충청북도음성교육청	금왕도서관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53-3
충청북도단양교육청	단양도서관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상진리 734-1

【별표 3】

학생회관의 명칭과 위치

관할교육청	학생회관명	위치
충청북도제천교육청	제천학생회관	충청북도 제천시 청전동 470

【별표 4】

학생야영장의 명칭과 위치

관할교육청	야영장명	위치
충청북도충주교육청	중원학생야영장	충청북도 충주시 가금면 가흥리 172
충청북도제천교육청	제천학생야영장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학현리 산18-36
충청북도옥천교육청	옥천학생야영장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용방리 1016
충청북도영동교육청	영동학생야영장	충청북도 영동군 상촌면 물한리 643
충청북도괴산교육청	청천학생야영장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후평리 201-1

【별표 5】

교직원복지회관의 명칭과 위치

관 할 교 육 청	교직원복지회관명	위 치
충청북도충주교육청	충청북도교직원 복지회관	충청북도 충주시 종민동 510-3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한다) 제33조 내지 제36조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한다) 제7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청(이하 "본청"이라한다)에 두는 행정기구와 직속기관의 설치, 조직과 분장사무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한다) 제33조 내지 제36조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한다) 제7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청(이하 "본청"이라한다)에 두는 행정기구와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의 설치, 조직과 분장사무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역교육청 하부조직의 설치 등) 지역교육청 하부조직 설치와 사무분장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지역교육청 하부조직의 설치 등) 지역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 설치와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제4장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신 설>	제29조(설치)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으로 도서관, 학생회관, 학생야영장, 교직원복지회관을 둔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0조(도서관) ①도서를 수집·정리·분석·보존· 축적하여 공중의 열람 및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조사·연구·학습·교양 등 평생교육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서관을 둔다. ②도서관에 관장을 두며, 도서관장은 관할 교육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도서관의 위치 및 명칭은 【별표 2】와 같다.
<신 설>	제31조(학생회관) ①청소년들의 교양증진, 소질계발, 정서순화 등 전인교육에 기여하고, 여가선용을 통한 특별활동의 장을 마련하여 건전한 인격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학생회관을 둔다. ②학생회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관할 교육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학생회관의 위치 및 명칭은 【별표 3】과 같다.
<신 설>	제32조(학생야영장) ①학생들로 하여금 대자연과 접하게 하여 정서를 순화시키고 진취적 기상과 의욕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학생야영장을 둔다. ②학생야영장에 장장을 두며, 장장은 관할 교육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학생야영장의 위치 및 명칭은 【별표 4】와 같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3조(교직원복지회관) ①교직원의 자질 향상과 후생·복지증진을 위하여 교직원 복지회관을 둔다. ②교직원복지회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관할 교육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교직원복지회관의 위치 및 명칭은 【별표 5】와 같다.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 2005.1.25 법률 제7340호)

제34조(교육기관의 설치) 교육감은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당해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 2004.1.29 령 제18247호)

제12조(직속기관등의 하부조직설치) ①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직속기관과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의 조직과 공무원의 직급은 시·도 교육청간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직속기관과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의 장의 직급, 하부조직 및 그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당해 시·도조례 또는 조례의 위임에 의한 교육규칙으로 정한다.